

# 목 차

I.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자격을 안내 .....	2p
1. 건강보험 적용대상	
2. 지역가입자	
3. 직장가입자	
4. 피부양자	
5. 가족관계 증빙서류	
6. 건강보험 가입제외	
II.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안내 .....	7p
1. 보험료 산정	
2. 보험료 경감	
3. 보험료 납부	
4.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	
III. 건강보험 이용 안내 .....	10p
1. 보험급여	
2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	
3. 건강검진	
IV. 건강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기 .....	13p

# 1.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안내

## 1 건강보험 적용대상
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
-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

## 2 지역가입자(당연가입)

### 가입대상

외국인 지역가입 체류자격 코드

D-1	문화예술	E-1	교수	F-1	방문동거	H-1	관광취업
D-2	유학	E-2	회화지도	F-2	거주	H-2	방문취업
D-3	기술연수	E-3	연구	F-3	동반	G-1-6	인도적체류허가자
D-4	일반연수	E-4	기술지도	F-4	재외동포	G-1-12	인도적체류허가자 가족
D-5	취재	E-5	전문직업	F-5	영주		
D-6	종교	E-6	예술흥행	F-6	결혼이민		
D-7	주재	E-7	특정활동				
D-8	기업투자	E-8	계절근로				
D-9	무역경영	E-9	비전문취업				
D-10	구직	E-10	선원취업				

### 자격취득일

-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**6개월이 경과한 날**
- 유학(D-2), 초중고생(D-4-3), 비전문취업(E-9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은 입국일  
단, 입국일에 외국인등록과 체류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, 모두 충족된 날로 취득
-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, 외국인 등록일로 취득  
단,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에 지역가입자인 경우 출생일로 취득

### 자격상실일

- 체류기간 종료 또는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
- 1개월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, 출국일의 다음날
- 사망한 날의 다음날

## □ 재가입특례

- 한 달 이상 해외 체류 시 6개월 경과 후 자격취득이 가능하나, 아래 4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국한 날로 취득 가능
  - 본인이 지사 방문 또는 FAX, 우편, 고객센터 유선 등으로 신청
- ①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,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\*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
  - \* 직장가입자, 피부양자, 임의계속가입자로 취득 중이었던 자
- ②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, 6개월 이내에 입국했을 것
- ③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
  - 다만, 방문취업(H-2)에 한하여 출국 후 체류자격이 종료되고 6개월 이내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다시 입국한 날 취득 가능
- ④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독세대로 납부 및 익월 보험료 발생 시 당일 납부(미납 시 자격취소)

## □ 세대합가

-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합가하여, 함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.
  - ※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입증해야한다.

## Q&A

Q1. 외국인(체류코드 F-3)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24.8.1. 출국하여, 2024.10.1. 입국하였습니다. 이때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A1: 외국인은 한 달 초과 출국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. 출국일의 다음날인 2024.8.2.로 자격이 상실되며, 입국일로 6개월이 경과된 날인 2025.4.1.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

단, 재가입특례 조건을 충족한다면, 2024.10.1.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.

Q2. 외국인(체류코드 D-2)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24.8.1. 출국하여, 2024.10.1. 입국하였습니다. 이때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A2: 출국일의 다음날인 2024.8.2.로 자격이 상실되며, 유학생(D-2)은 입국일로 지역가입이 되는 체류코드이기 때문에, 2024.10.1.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

단, 2024.10.1.에 체류허가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.

### 3 직장가입자

#### 가입대상

-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,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자

#### 가입절차

- 사업장의 사용자가 14일 이내 신고

#### 보험료

-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: 보수월액 X 7.09%(2024년 기준)
  - 사용자와 근로자가 50%씩 부담
  - 연말정산 또는 직장 퇴직시 정산

### 4 피부양자

#### 가입대상

-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**피부양자 인정기준**을 충족하는 자
- 인정범위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미혼인 형제자매
- 제도개선 사항 (2024.4.3.부터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상)

**기존** 입국 즉시 취득



**개선**

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취득

※ 단,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즉시 취득

- ①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
- ② 체류자격: 유학(D-2), 초중고생(D-4-3), 비전문취업(E-9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

#### 구비서류

- 피부양자 자격취득·상실 신고서 1부,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

※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대한민국 국민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

	국내서류	국외서류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(배우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만 인정)</li> <li>-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</li> <li>-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</li> <li>- 주민등록등본</li> <li>-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(대만)의 인증을 받은 서류</li> </ul>	<p><b>① 서류</b></p> <p>가족관계나 혼인·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(또는 공증문서)</li> <li>- 이름, 생년월일, 사진, 본국의 신분번호 등 2가지 이상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.</li> </ul> <p><b>② 외교부 인증</b></p> <p><b>①</b>의 서류에 문서발행국 외교부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주재 재외공관의 확인</p> <p><b>③ 한글 번역</b></p> <p>국내 번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증인의 번역공증을 받은 번역본</li> <li>-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한 번역본</li> </ul> <p>국외 번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서발행국에서 번역한 경우, 번역본에도 <b>②와 동일한 절차로 인증을 받아야 함.</b></li> </ul>
유효기간	발급일부터 3개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류 발급일로 9개월</li> <li>- 또는 문서발행국 외교부 인증 or 아포스티유 or 한국 주재 재외공관의 확인일로부터 9개월</li> </ul>
사례별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부양자</li> <li>① 외국인 등록증    ② 가족관계서류    ③ 혼인관계서류</li> <li>- 세대합가</li> <li>① 외국인 등록증    ② 가족관계서류</li> </ul>	
참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부양자의 경우, 본인의 혼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동일한 직장가입자(세대)에 3개월 이내 피부양자 등재(세대합가) 시, 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.</li> <li>- 부모-자녀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.</li> </ul>	

**Tip**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한다면, 출국 전 본국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

## 6 건강보험 가입제외

### □ 구비서류

- 외국의 법령,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, 건강보험 가입의무 면제

	외국의 법령	외국의 보험	사용자와의 계약
특징	국가기관 등에서 의료보장 - 프랑스, 일본, 미국, UN 등	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이용하다가 한국 입국 후 계속해서 해당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	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단체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또는 외국 회사에서 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 등
기간	가입제외 기간은 준영구적이며 본인 신청 시 재가입 가능. 다만, 재가입 시 같은 사유로 다시 가입제외 불가	가입제외 기간은 최대 1년이며, 가입제외 사유가 해소 된 날 건강보험 재가입	
제출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공통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·직장·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서(해당지역 신고서 제출)</li> <li>-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</li> </ul> </li> <li>* 사유별 서류(한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한글 번역 필요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의 법령: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(프랑스: 외국인등록증, 일본: 자국의 건강보험증, 미국UN: 유니폼카드 등)</li> <li>- 외국의 보험: 외국의 민간보험 가입증서 및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음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li>- 사용자와의 계약: 의료보장을 받음을 증명하는 서류,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li> </ul> </li> </ul>		

## II.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안내

### 1 보험료 산정

-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,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부과
  - ※ 단, 세대주가 미성년자이거나 체류자격이 F-2-4(난민인정자), F-1-16(난민인정자의 가족)인 경우,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(평균보험료 미적용)
- 평균보험료: 150,990원(2024년 기준) … 매년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음.
- 납부기한: 전달 25일 예) 2024년 3월분 보험료는 2월25일까지 납부

### 2 보험료 경감

- 체류자격에 의한 경감
  - 요건: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, 재산과표 13,500만원 이하
  - 대상 및 경감률

체류코드	경감률
D-2(유학), D-4(일반연수), 재외국민 유학, 재외동포 유학	50%
D-6(종교)	30%
G-1-6(인도적체류허가자) 및 G-1-12(인도적체류허가자 가족)	30%

- 거주지역에 의한 경감
  - 섬·벽지경감: 50%
  - 농어촌경감: 22%
    - 읍·면지역에 거주하면서,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 또는 농어업인이 있는 세대
    - 동의 녹지지역,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인이 있는 세대
  - 농어업인 지원: 28%
    -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어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
- 경감률은 최대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### 3 보험료 납부

#### □ 납부방법

구분	주요내용
금융기관	▶ 창구, 공과금 수납기(전자납부번호고지서, CD/ATM 등)
자동이체	▶ 계좌 또는 신용(체크)카드로 신청 가능 ※ 신청방법: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The건강보험(앱), 전화(☎1577-1000), 방문(지사, 은행), 팩스, 우편 등 ※ 자동이체 금액: 지역가입자(200원)
신용(체크)카드	▶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The건강보험(앱), 인터넷(모바일)지로(www.giro.or.kr) ※ 카드 이용 시 납부대행 수수료(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) 납부자 부담
인터넷	▶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, 금융기관 인터넷뱅킹/공과금 납부
모바일(APP)	▶ The건강보험, 모바일지로
가상계좌	▶ 고정식 가상계좌(고지서 표기), 회전식 가상계좌(고객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, 모바일 어플을 통한 셀프 발급)
편의점	▶ 고지서로 현금 또는 현금카드(우리·신한 이외 타행이체수수료 500원 발생) ※ 납부가능 편의점: GS25, CU, 세븐일레븐, 미니스톱
카카오페이	▶ 고지서 QR코드 스캔 납부

#### □ 전자고지

##### ○ 종류

- 이메일
- 모바일 알림톡
- 네이버앱 전자문서

##### ○ 신청방법

- 공단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앱 신청
- 우편 및 팩스 신청 (홈페이지 신청서 활용)
- 가까운 지사 방문 및 유선신청(1577-1000)

#### □ 송달지변경

- 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납부의무자가 신청
- 신청방법: 인터넷, 우편, 팩스, 방문 및 유선

## Q&amp;A

Q. 주소가 바뀌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했는데, 건강보험공단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나요?

A: 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정보를 연계 받고 있습니다.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였다면,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변경된 주소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,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4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

##### 건강보험 급여제한

- 외국인 등이 선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납부마감일(25일)의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급여제한
- 보험료를 추후 완납하더라도, 체납기간 진료비 환급불가

##### 법무부 비자연장제한

- 보험료를 5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, 기타징수금이 10만원 이상 체납 될 시, 체류기간 연장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

## Q&amp;A

Q. 기타징수금이란 무엇인가요?

A: 보험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을 확인하여 가입자, 요양기관, 제3자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하여 결정·고지한 금액

## III. 건강보험 이용 안내

### 1 보험급여

- 건강보험
  -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물(요양급여, 건강검진) 또는 현금급여(요양비)를 제공하는 서비스
- 장기요양보험
  -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노인 등에게 수급자의 가정이나 입소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(서비스)를 제공하는 제도
- 병·의원 이용 시, 건강보험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

### Q&A

Q: 2024.1.1. 입국한 외국인(체류코드 H-2)은 2024.1.1.-2024.3.31.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. 2024.4.3. 병원에 방문했는데,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. 그 후, 공단으로부터 4.3.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. 어떤 상황인가요?

A: 직장가입자는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, 지역가입자는 5가지 체류코드\*를 제외하고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.

2024.1.1.-2024.3.31.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이며, 퇴사 후 지역가입은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.7.1.에 가능합니다. 따라서 2024.4.1.~6.30.은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.

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 상실신고하기 때문에, 실제 퇴사를 했어도 상실처리 전이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, **5가지 체류코드\***를 제외한 외국인이 퇴사를 하고 입국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, 병원 이용하시기 전 공단에 건강보험 가능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\*유학(D-2), 초중고생(D-4-3), 비전문취업(E-9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

## 2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- 임신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,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제공
- 지급대상 및 금액
  -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·자궁외임신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-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
  - 지급금액: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, 다태아 140만원
    - ※ 단, 다태아는 추가지급신청 시,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급
    - 예) 2태아: 60만원 추가, 3태아: 160만원 추가, 4태아: 260만원 추가...
- 사용기간
  - 사용시작일: 이용권 발급일
  - 사용종료일: 분만예정일 혹은 출산일(유산일, 사산일)로 부터 2년
- 사용범위
  - 임신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(영유아는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)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
  - 질병,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(의약외품 사용제한)
  - 해외 출산(유산)한 경우는 지급 신청 불가

### Q&A

**Q. 외국인등록번호로 바우처를 신청한 후 국적취득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**

**A:**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번호의 자격은 상실되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도 중지됩니다. 따라서,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 신분증, 주민등록표등본 1통, 주민등록표초본 1통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바우처 변경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해야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공단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불가

### 3 건강검진

#### □ 일반검진

- 지역가입자: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(2년 주기)
- 피부양자: 20세 이상(2년 주기)
- 직장가입자: 비사무직(1년 주기) / 사무직(2년 주기)
- 검사항목

대상질환	검사항목
비만	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
시각, 청각이상	시력, 청력
고혈압	혈압
신장질환	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e-GFR)
빈혈증	혈색소
당뇨병	공복혈당
간장질환	AST, ALT, r-GTP
폐결핵 흉부질환	흉부방사선촬영
구강질환	구강검진

#### □ 6대 암검진

암종	위암	대장암 (분변잠혈검사)	유방암	자궁경부암	폐암	간암
연령	40세 이상	50세 이상	40세 이상 여성	20세 이상 여성	54세~74세 고위험군	40세 이상 고위험군
검진 주기	2년	1년	2년	2년	2년	6개월
검사 방법	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검사	분변잠혈검사 (FOBT)  (양성 판정시, 대장내시경 검사 가능)	유방촬영검사	자궁경부세포검사	저선량흉부CT + 검진결과 사후상담	간초음파검사 + 혈청알파태아 단백검사

#### □ 영유아 건강검진

- 생후 14일 ~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
  - 영유아 성장단계별 8차(구강검진 4회 포함)

## IV. 건강보험 이용 안내
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: 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
-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(APP): The 건강보험



앱 설치용 QR코드

- 유튜브 영상(한국어, 영어)

제작내역	한국어	영어
		
	<a href="https://youtu.be/GGEYPuRUIQk">https://youtu.be/GGEYPuRUIQk</a>	<a href="https://youtu.be/zoK873IDAmk">https://youtu.be/zoK873IDAmk</a>

- 외국어상담 서비스
  - 1577-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
  - 033-811-2000 외국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)상담가능